대통령령 제 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4조제5호 중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연합회"를 "중앙회"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을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한"으로, ""결합의뢰기관"이라한다)는 공동으로"를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라한다)와 협의하여"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합의뢰기관 및"을 "결합의뢰기관,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결합의뢰기관"을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결합의뢰기관이"를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로, "결합의뢰기관 간"

을 "결합의뢰기관, 정보집합물 보유기관 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결합의뢰기관이"를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2의2. 정보집합물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결합하려는 경우 결합키를 통한 재식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할 것
- ⑥ 데이터전문기관은 제3항제5호에 따른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및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해 결합의뢰기관으로 하 여금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용회복위원회

제19조제2항제7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업 및 조합과 유사한 기업 및 조합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용회복위원회

제21조의2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제22조의4제7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반출 업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기관에 한정한다)

제22조의4제7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법 또는"을 "이 법 또는"으로, "(이하"를 "(이하 이 호에서"로, "것."를 "것"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가. 법 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7항제4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26조의4제2항제2호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제24조의2제6호 중 "연합회"를 "중앙회"로 한다.

제28조의3제6항제2호 중 "국세"를 "국세, 관세"로 한다.

제30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개인신용정 보 전송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일 전까지"를 "5영업일 전까지(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제공 전과 비교하여 신용정보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로 하고,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을 "정보제공 사유가 발생한 날"로, "7일 미만"을 "5영업일 이내"로, "1일"을 "1영업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각각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법 제32조제6항제	개인신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10호에 따른 이 법	정보를 제	따른 기한	따른 방법. 다만, 개
또는 다른 법률에 따	공하는 자	가. 개인신용정보	인신용정보의 제공의
라 제공하는 경우		제공의 근거가	근거가 되는 법률에
		되는 법률에서	서 알리거나 공시하
		정하는 바가 없	는 방법을 달리 정하
		는 경우: 개인신	는 경우에는 그에 따
		용정보를 제공하	른다.
		기 전까지(단, 법	가. 일반적인 경우:
		제23조제2항에	서면, 전화, 문자
		따라 제공하는	메시지, 전자우
		경우는 개인신용	편, 팩스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6 개월 이내로 한 다) 나. 개인신용정보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하 지 않은 경우: 개 인신용정보를 제 공한 날을 기준 으로 6개월 이내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것을

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그 기한을 정한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해당 신 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 는 방법 제공의 근거가 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 체의 연락처 등 을 알 수 없는 경 우: 제34조의4제 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

경우: 해당 법률	
에서 정한 기한	

#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8. 4.>

## 대주주의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제9조제7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항제2호나목에 따른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금융기관인 경우	나.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
	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5년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또는 「조세범 처
	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
	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
	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
	된 자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 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는 자
- 다) 그 밖에 가) 또는 나)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 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라.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 2. 대주주가 「국가재정 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이하 "기금등" 이라 한다)인 경우

제1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 자업에 관한 법률」 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 회용조제19항제1호에 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 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준을 충족할 것
- 법 제249조의13제1 다.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차입으로 조항에 따른 투자목적회 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 라. 제1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제1호다목4)의 경우로서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서 개인인 경우
-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나. 제1호다목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제1호 다목4)의 경우로서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 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인 경우
- 5. 대주주가 외국 법인 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 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나.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 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 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ㆍ기능ㆍ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 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 은 사실이 없을 것
  - 다. 제1호다목 ·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6.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으로 확 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
-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 목·나목의 요건
-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
-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 나목·다목의 요건

비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 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 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 주
- 2. 위 표 제5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5호 각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시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위 표 제5호 각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u>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u>
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사 및 벤처투자조합	
④ ~ ① (생 략)	④ ~ ⑰ (현행과 같음)
18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u> 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률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① ~ 26 (생 략)	⑪ ∼ ∞ (현행과 같음)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	
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	
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	

용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정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1. ~ 4. (생 략)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u>정하</u> <u>는</u> 서류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 을 수 있는 자) ① (생 략)

-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말한다.
- 1. ~ 13. (생략)
-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u>.</u>
<u>.</u>
1. ~ 4. (현행과 같음)
5 <u>정하</u>
<u> </u>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
을 수 있는 자) ① (현행과 같
을 가 썼는 게기 ① (한 8의 E 음)
②
②

15. ~ 23. (생략)

③ (생략)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① (생략)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 정보회사등 및 제3자(이하 이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 ③ <u>결합의뢰기관 및</u> 데이터전문 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제 공·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 다.
- 1. <u>결합의뢰기관</u>이 정보집합물을 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을 가. · 나. (생 략)
- 2.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
   2.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 --- 

   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
   -----

15. ~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이용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결
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결합
할 데이터를 보유한
<u>"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u>
라 한다)와 협의하여
<u>.</u>
③ 결합의뢰기관, 정보집합물
보유기관,
<b>.</b>
1. 정보집합물 보유기관
가.·나. (현행과 같음)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u>결합의뢰기관 간</u>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u>신</u> 설>

3. <u>결합의뢰기관이</u> 데이터전문 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 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 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 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 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4. ~ 6. (생 략)

④·⑤ (생 략)

<신 설>

⑥ (생략)

결합의뢰기관, 정보집합물
보유기관 간
2의2. 정보집합물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결합하려는 경우 결
합키를 통한 재식별 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u>결합할 것</u>
3. 정보집합물 보유기관이
4.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데이터전문기관은 제3항제5
호에 따른 가명처리 또는 익명
처리의 적정성 평가 및 가명처

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해 결합

의뢰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

하게 할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 • 제공 ·처리·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결합의뢰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 중 「개 인정보 보호법 . 제28조의3제1 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도 지정 된 기관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기준 • 절차 등에 따라 정 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저 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
-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 6. (생략)
  -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u>⑧</u> <u>제7항</u>
	<u>⑨</u>
	제8항
4]	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의 제공 요청 등) ①
	1. ~ 6. (현행과 같음)
	7. 신용회복위원회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 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 는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 6. (생략)
-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합의 인증·인가·인정·지정·등 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가. ~ 라. (생 략)

<신 설>

### ③ ~ ⑤ (생 략)

-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 <sup>저</sup>용) ① (생 략)
  -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이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u>.</u>
·.
1. ~ 6. (현행과 같음)
7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
업 및 조합과 유사한 기업
및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
大 五百二年八 日 8 刊 世 9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③ ~ ⑤ (현행과 같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및 조합③ ~ ⑤ (현행과 같음)세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③ ~ ⑤ (현행과 같음)       메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① (현행과 같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③ ~ ⑤ (현행과 같음)       메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① (현행과 같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 3. (생 략)
-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5. ~ 28. (생략)
- ③ ~ ① (생 략)
-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지의 업무) ① (생 략)
  - 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 2의3. (생 략) <신 설>
  - 3. (생략)
-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 조 ⑥ (생 략)
  - ⑦ 법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신용회복위원회
5. ~ 28. (현행과 같음)
③ ~ ① (현행과 같음)
에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
<u>한 업무</u>
 3. (현행과 같음)
세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
⑦

- 1. ~ 3. (현행과 같음)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의3제3항에 따른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반출 업무(같은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8 · 9 (생략)
- ①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관리체계를 말하다.
- 1. 법 제26조의4제4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 춘 위험관리체계
  - 가. 법 제26조의4제2항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나. (생 략)

2. 법 제26조의4제4항제2호의

소 제18에 따는 신문기원으
로도 지정된 기관에 한정한
<u>다)</u>
<u> 5</u> <u>제4호</u>
8·9 (현행과 같음)
①
1
가. 법 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7항제4호의 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대표
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
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이 법 제26조의
4제2항제2호의 업무를 동
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나. (현행과 같음)
2

고 게1청세 메르 저무기라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 춘 위험관리체계

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따른 다른 업무(이하 "다른 업무"라 한다)를 동시에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나. • 다. (생략)

-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 제2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역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 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5. (생략)
  -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 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7. ~ 15. (생략)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제2 요구) ① ~ ⑤ (생 략)

가
<u>이 법 또는</u>
<u>(0)ō</u> - 0]
호에서
 것 <단서
— — — 삭제>
나.•다. (현행과 같음)
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
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
~ 5. (현행과 같음)
5
<u>중앙회</u>
7. ~ 15. (현행과 같음)
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생략)
- 2. <u>국세</u> 및 지방세 납부정보
- 3. ~ 5. (생략)
- (7) ~ (13) (생 략)
-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 실의 조회 등) ① ~ ③ (생 략)
  - ④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품 및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경우는 제외한다.
  - 1. ~ 6. (생 략) <신 설>

0
<u>.</u>
1. (현행과 같음)
2. <u>국세, 관세</u>
3. ~ 5. (현행과 같음)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
실의 조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u>7.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u>
<u>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개</u>

⑤ ~ ⑨ (생 략)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 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연체사실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 | 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신 | 용정보를 제공하기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5. (생 략)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① ~ ③ (생 략)

④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 | ④ ----- 법 제38조제5 4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

റി മ	1971	친 전송
워수	나용성다	1. 선종

(5) ~	(9)	(현행과	같음
$(5) \sim$	(9)	(현행과	같음

의 사전통지) ① • ② (생 략) 의 사전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3	 	 

-- 5영업일 전까지(정보제공으 로 인하여 정보제공 전과 비교 하여 신용정보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 ---- 정보제공 사유가 발생한 날 --- <u>5영업일 이내</u>--------- 1영업일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 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 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u>법</u>
   <u>제38조제4항</u>에 따른 처리결과
   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
   지 내용
- 3. (생략)
- ⑤ (생략)

<u>법</u>
제38조제2항
1. <u>법 제38조제2항</u>
2 <u>법</u>
제38조제5항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